인력지원

- ☑ 관련부처
 고용노동부
- ☑ 지원대상 중소기업
- ☑ <mark>신청시기</mark> 연중수시

3.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

중소기업에서 미취업 청년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청년 미취업자에게는 중소기업 현장경험을 비탕으로 적성과 경험에 알맞은 정규 일자미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신규 인력 채용시 소요되는 인적, 물적 부담을 줄여주는 인력지원 사업

🞎 지원대상

- 이턴 실시기업
 - 「고용보험법」상 우선지원대상기업(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 포함)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
 - * 우선지원대상기업(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제12조): 제조업(500인 이하), 광업·건설업·운수업 등(300인 이하), 금융 및 보험업 등(200인 이하), 기타 산업(100인 이하)
 - ※ 다만,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
 - ① 벤처기업 지원업종
 - ② 지식기반서비스업
 - ③ 문화콘텐츠분야 기업
 - ④ 신·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(신고된 설치전문기업, 설비기관-에너지관리공단 신·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전문 기업 리스트 참조)
 - ⑤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·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·역외보육기업
 - ⑥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, 지역별·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, 기타 사업단체 (비영리 법인)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·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·역외 보육기업
 - 제외대상
 - 소비·향락업체, 근로자 파견업체* 및 근로자 공급업체(용역업체 포함)
 - * 당해 파견업체에서의 인턴근무는 가능
 - 3개월 미만의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 업체
 -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
 -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
 -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,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정상적인 인턴근무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
 -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(보험회사, 제약회사, 물류 도매업 등)

- 학원(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」 및 「도로교통법」에 의한 학원), 숙박·음식업종 사업체
- 인턴 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. 이 사업의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
- 인턴 참여자
 - 인턴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
 - 우대사항
 -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 가구의 청년.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참여 청년. 가정부양책임자 등 취약 청년
 - 제외대상
 -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자
 - * 단, 단기간 근로(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내)나 일용근로형태 취업자 참여 가능
 - 이턴 신청일 이전 이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. 취업 또는 「병역법」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 참여
 - 동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,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사한 자
 - 간호(조무)사, 이·미용사, 운전기사 등 면허·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·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 참여
 -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
 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* 단,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 체류 자격자는 가능
 - 허위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
 -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비속, 형제·자매관계에 있는 자
 - 인턴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중인 자

🞎 지원내용

- 지원수준 : 인턴약정서상에 정한 약정임금의 50%를 인턴기간 동안 지원
- 지원한도 : 최고 월 80만원. 최고 6개월
- 채용하도
 - 최초의 인턴지원협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실시기업 규모별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~10인 미만 30%. 10~50인 미만 25%. 50인 이상 20% 이내에서 인턴

채용이 가능

- 추가지원 : 정규직 전화시
 - 인터기가 종료 이후 정규직으로 전화한 경우에는 월 65만원씩 6개월가 추가로 지워
 - 지원금은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급
- 주의사항
 - 사전직무교육은 인턴채용 전·호 1차 지원금 신첫 전 인턴이 반드시 이수 (교육이수증 제출)
 - 기업과 산기협 간 인턴지원협약 체결 전 근무가 시작된 인턴은 지원 불가
 - 인턴 및 정규직 전환 후 지원기간 동안 기업 내 인위적 감원발생시 인턴지원금 지급 중단

🞎 지원절차



*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

🞎 신청절차

• 신청시기 : 연중수시

• 신청방법 : 홈페이지(www.work.go.kr/intern)에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하여

출력 후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



www.RNDJ0B.or.kr

-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(02)3460-9086, 87
- 고용노동부 취업지원과